

대전지방법원 2021. 10. 6 선고 2021가단913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1. 9. 15.

판 결 선 고 2021. 10. 6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전 321㎡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세종등기소 1993. 8. 25. 접수 제3345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1호증,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의 취지를 종합하면, 원고는 1993. 8. 24. 피고와

채권최고액 20,000,000원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1993. 8. 25. 피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C 전 321㎡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근저당권은 10년의 경과로 시효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,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.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김호석